

중국의 개정 전리법 소개



박희주

기계사무관/특허청 자동차심사팀 담당관실

목 차

I. 서언

II. 개정 배경

III. 주요개정내용

- ① 입법목적의 보완
- ⑥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단위의 전리권 보유규정 삭제
- ④ 직무발명 계약우선제 도입
- ⑤ 직무발명 성과보수제 채택
- ⑧ 허락판매 추가
- ① 불법제품의 합법사용 제한
- ⑥ 제소 전 임시조치의 추가
- ⑦ 권리침해 배상액 계산 규정 추가
- ① 성, 자자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 직능을 명확화
- ① 전리권 분쟁처리에 있어서 행정절차 활용 확대
- ⑧ 공중이익의 보호와 전리권자의 권리남용 방지
- ① 전리국제출원(PCT)의 법률근거를 명확화
- ⑪ 철소(撤銷) 제도의 폐지
- ①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에 대한 최종심을 인민법원이 수행
- ⑨ 전리권 양도 및 외국전리출원의 절차를 간소화
- ⑩ 심사비준 절차 등 기타 개정사항
- ⑪ TRIP협정에 진일보 접근

I. 서언

중국이 전리법(專利法)과 전리법실시세칙(專利法實施細則)을 전면 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특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각각 단행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전리법은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전리(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의장)를 하나의 「전리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리법의 개정은 중국의 전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번 전리법 및 그 실시세칙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개정 배경

중국은 1985년 전리법을 최초로 시행한 이래 2000년 말 기준으로 출원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함으로써 전리출원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1996년~2000년)의 전리출원량이 전체 출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오늘날 중국 경제와 산업부분의 급성장을 대변하고 있다.

중국의 전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은 「전리법선전제강(專利法宣傳提綱)」에서 이번 전리법 개정의 배경을 국내·외의 두 봉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인 면에서 볼 때, 첫째는 과학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과 전세계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국제경제생활과 경제교류에 있어서 전리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아래, 국제무역에서 전리 및 기타 라이센스 무역 등에 의한 무형무역(無形貿易)의 성장속도가 유형무역(有形貿易)을 추월하고 있어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는 전리를 포함한 지식산권(知識產權)이 경제의 주요 성장엔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많은 국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지식산권을 시장경쟁과 경제경쟁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들은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식산권의 협상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TRIPS협정을 이끌어내었으며, TRIPS협정은 오늘날 지식산권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산권 협정이 되었다. 또한 이 협정은 분쟁해결기구를 지식산권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 영향력이 과거의 모든 지식산권 관련 국제조약을 추월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개혁개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국내상황으로 볼 때, 1992년 제1차 전리법 개정이래 현재까지 국내형세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첫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다. 1992년 이전에는 중국이 과연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의 개혁목표로 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전리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술창조의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1999년에는 「기술창조의 강화와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의 실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제13조는 전문적으로 지식산권 문제를 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권의 관리

와 보호를 강화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리법의 제2차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전리법 개정을 통하여 중국은 아래와 같은 목적이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 특히 국유기업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중국은 작년 중국공산당 제15회 중앙위원회 4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에 관하여 의견의 중대한 문제의 결정」을 수립하여 국유기업 개혁에 새로운 돌파구 찾기를 시도하였다. 이 「결정」은 현대기업제도의 수립, 자식산권제도의 실현,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정치와 기업의 분리, 건전한 정책결정, 집행감독체계의 정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을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법 인주체와 시장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전리제도가 과학기술의 진보에 더욱 이바지하고, 경제와 과학기술 상호간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입법 목적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내세워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특히 개정전리법 제6조 제2항은 직무발명에 있어서 단위의 불질과 기술조건을 이용하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을 통해 비직무발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진일보하게 정비하여 전리보호의 역량을 배가하였다. 이것은 이번 중국 전리법 개정의 중요사항 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에서 부실한 전리보호의 문제를 겪어가며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의 양태 경로를 강화하였다. 사법 측면에 있어서 개정된 전리법 제61조는 전리권을 받기 이전에 타인이 전리에 대하여 실시를 준비하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 측면에서는 전리관리기관이 권리침해분쟁 또는 기타분쟁을 처리하는 권한을 보유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전리의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하였다. 전리 심사비준 절차의 간소화 및 정비는 전리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였고, 전리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TRIPS 규정에 더욱 근접하도록 정비하였다. 중국의 전리법은 제1차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TRIPS의 요구에 도달하였으나 아직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여섯째, 국무원과 성급지방전리기구 상호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전리법 개정은 전리대리기구, 전리관리기관 및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책임과 조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III. 주요개정내용

중국의 개정 전리법은 총 8장, 6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리권 수여의 조건, 제3장 전리의 출원, 제4장 전리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5장 전리권의 기간·증지 및 무효, 제6장 전리실시의 강제허가, 제7장 전리권의 보호, 제8장 부칙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정 전리법실시세칙은 총 11장, 1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리의 출원, 제3장 전리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4장 전리출원의 복심과 전리권의 무효선언, 제5장 전리실시의 강제허가, 제6장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장려 및 보수, 제7장 전리권의 보호, 제8장 전리등기 및 전리공보, 제9장 비용,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11장 부칙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하 개정 전리법 및 전리법실시세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입법목적의 보완

개정 전리법은 전리법 제1조의 입법목적 내용을 일

부 보완하였는데, 원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을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촉진'으로 고쳤다. 이것은 전리획득을 위주로 하는 기술창조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규모의 자주적인 지식산권을 형성함으로써 하이테크 산업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단위의 전리권 보유규정 삭제

개정 전리법에서는 단위의 성격에 따라 전리권의 '보유(hold)'와 '소유(possess)'로 구분하여 것을 삭제하였는데, 개정 전에는 전리권을 보유한 전민소유제단위는 전리발명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이 없어서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코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주관기관의 비준 등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개정 전리법에서는 국유사업단위를 시장경쟁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리출원 및 전리획득의 권리와 의무 방면에 있어서 비국유사업단위와 동등한 지위를 험유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전리법에서는 합작완성의 발명(전리법 제8조), 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양도(제10조) 및 계획허가(제14조)의 조문 등이 개정되었다.

ⓒ 직무발명 계약우선제 도입

전리법은 발명창조에 기여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보상하며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있다. 1984년의 전리법은 직무발명창조의 범위에 대해 두가지의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본 단위의 물질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다. 본 단위의 물질조건이라 함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재료 또는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전리법의 15년간 실시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사업의 관리체제 개혁, 특히 과제제(課題制) 실시의 수요

이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 제6조는 계약우선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과학기술인력과 단위가 계약을 통하여 단위의 물질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그 귀속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단위의 물질조건을 이용해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발명자가 단위에게 사전의 약정에 따라 지금 또는 사용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정은 과학연구인력의 전리출원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하고, 단위에 유휴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설비 등 물질조건의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직무발명 성과보수제 챕터

1984년의 전리법 제16조는 전리권이 수여되고 실시된 후에 단위는 직무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전리법은 발명창조전리가 실시된 후에 단위는 그 응용범위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시세칙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사업단위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발명전리의 경우 2000위엔 이상, 실용신형전리 또는 외판설계전리의 경우 500위엔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보수로써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장려금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은 중국의 국유사업단위 이외의 다른 단위에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직무발명을 고취하였다.

일회성 위주의 장려금 지급을 보수의 지급 형태로 바꾼 것은 과학기술인력의 발명창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리가 수여된 이후에도 전리가 사장되지 않고 적극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⑤ 허락판매 추가

TRIPS 협정에 근거하여 전리는 제품전리와 방법전리는 나눈다. 제품전리의 전리권자는 타인이 해당제품을 제조, 사용, 허락판매(offering for sale), 판매,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방법전리권자는 타인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하며 또한 그 방법으로 직접 제조하는 제품을 제조, 허락판매, 판매, 사용,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중국이 이 방면에 있어서 TRIPS 협정과 유일한 차이점은 허락판매의 규정이 없는 것이었다. 허락판매는 전리권자가 타인이 판매 전에 판매추진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침해행위를 초기상태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규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리보호를 강화하고 TRIPS 협정과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허락판매를 추가하였다.

⑥ 불법제품의 합법사용 제한

원래 전리법 제62조는 선의의 제3자가 전리침해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권리침해의 예외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고려가 합리적인 면도 있으나 권리침해자에게 불법제품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관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개정 전리법에서는 이에 대해 선의의 제3자가 권리침해제품을 사용, 허락판매, 판매한 합법적인 출처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본 규정은 어느 정도 권리침해자가 본조 항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그 권리침해제품을 판매하는 맹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누구나 어떤 상품이 권리침해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영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전리권의 보호역량을 강화하였다.

⑦ 제소 전 임시조치의 추가

TRIPS 협정 제41조는 법집행 절차에 있어서 권

리침해행위를 제지하는 실효성있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권리침해행위의 발생을 제지하거나 수입품을 포함한 권리침해상품이 자신의 관할권 내의 상거래 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고발된 권리침해의 관련증거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법집행 절차에는 제소 전에 유관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는 원래 없었으나, TRIPS 협정과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 제61조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자신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 한다는 증거증명이 있으며,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유관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⑥ 권리침해 배상액 계산 규정 추가

전리침해의 손해배상은 전리권침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민사책임 중의 하나인데, 이는 공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며 권리권자가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실제손실이 합리적으로 배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정 전리법 제60조는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에 의해 받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되며, 피권리침해자의 손실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리허가사용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 직능을 명확화

중국은 전리제도를 실시한 이래 지방전리관리업무 체계의 정립과 발전을 중시하여 왔으며 전리관리업무

의 기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왔다. 지방전리관리업무부문의 직능의 발휘를 촉진하고 전리의 행정 관리 및 행정집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 제3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전리관리업무를 책임진다.」라고 그 직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실시세칙 제78조에는 전리업무관부문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전리관리 업무량이 많고 또한 실제처리능력이 있는 구가 설치된 시인민정부가 설립한 전리업부관리부문을 가리킨다.」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 전리업무관리부문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였다.

① 전리권 분쟁처리에 있어서 행정절차 활용 확대

먼저, 개정 전리법 제57조는 지방전리관리업무부문이 전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리권 침해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각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소도 하지 않고 권리침해행위를 중지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리관리업무부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경로는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처리가 신속하며 또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권리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즉각 권리침해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전리권자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효력이 있는 보호방법으로써 인정받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번 개정 전리법은 전리관리업무부문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뿐 직접 처리를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둘째, 단체권리침해 및 반복권리침해의 현상이 그

치지 않고 전리분쟁의 복잡성이 증가하며 처리 난이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경로를 설치하여 사법경로에 대한 보충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정 전리법 제57조 및 제58조는 전리관리업무부문의 시장질서유지 직능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제58조는 전리관리업무부문이 모방전리를 조사하고 개정 명령 및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전 전리법에서는 타인의 전리를 모방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고의로 위법행위를 하고 법제도를 문란케 했을 지라도 단지 사법수단에 의해 전리침해행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⑤ 공중이익의 보호와 전리권자의 권리남용 방지

전리법은 실용신형전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신형전리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 제57조는 실용신형에 대해 전리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실시세칙에서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관련된 실용신형전리가 전리법 제22조의 신영성(신규성) 또는 창조성(진보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대비문건과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전리국제출원(PCT)의 법률근거를 명확화

중국은 1994년 1월 1일 정식으로 PCT조약의 체약국이 되었으며, 중국전리국은 정식으로 이 조약의 수리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되었다. 출원인이 PCT 경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리를 출원하며 전리행정주관부문이 국제의무를 이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

제20조는 유관문제에 대하여 원칙규정을 마련하였다.

⑥ 철소(撤銷) 제도의 폐지

중국은 1992년의 전리법 개정 당시에 권리수여전의 이으제(異議制)를 취소하고, 권리수여 이후의 철소(이의신청) 절차로 바꾸었다. 구 전리법 제41조에는 「전리국이 전리권 수여를 공고한 날부터 6개 월내에 누구든지 그 전리권의 수여가 이 법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리국에 그 전리권을 철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래는 이 절차가 공중이 전리국에 대하여 전리권 수여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실수를 지적하고, 전리행정주관부문이 행정절차를 통해 적시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절차가 무효 절차와 중복되는 점이 있어 절차의 번잡을 초래하였고, 철소 절차가 악의로 이용되어 권리자가 무효 절차를 이용해 지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실제사례가 발생함으로서 절차의 간소화와 소송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소 절차를 삭제하였다.

⑦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에 대한 최종심을 인민법원이 수행

TRIPS 협정 제32조는 전리를 철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4년 전리법은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 출원의 권리확정과 무효선언에 대하여 전리복심위원회(專利覆審委員會)가 최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의 합법적인 권리 을 충분히 보호하고 TRIPS 정신과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 출원의 권리확정과 무효선언에 대한 최종심을 인민법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⑧ 전리권 양도 및 외국전리출원의 절차를 간소화

개정 전리법은 첫째, 전리출원권의 양도 또는 전리권의 계약은 국가지식산권국에 등기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제10조), 공고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을 규정하였다. 둘째는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에 전리출원하는 경우에 국무원 유관주관부문의 동의(제20조)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이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개정 전리법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시세칙 제14조에는 관련당사자의 편의와 행정관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과 국무원과학기술행정부문이 회동하여 비준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⑨ 심사비준 절차 등 기타 개정사항

심사비준과 권리유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당사자의 학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외관설계의 전리성 조건(전리법 제23조), 외국검색 및 실사결과자료의 제출(제36조), 전리권의 효력발생 시기(제39조 및 제40조), 무효절차의 제3자 참가 노송(제46조) 및 소송시효(제62조) 등을 개정 내지 조정하였다. 또한, 실시세칙에서는 전리출원과 관련된 각종 비용납부 규정 등을 개선하였다.

⑩ TRIP협정에 진일보 접근

중국은 1992년 전리법 제1차 개정을 통해 주요 쟁점에 있어서 TRIPS협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식산권, 특히 전리보호의식을 강화하고 발명의 출원과 보급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TRIPS협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되었다.

- 전리권자가 타인이 그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허락판매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권한을 보유토록 규정
- 실용신형과 외관설계에 대한 복심 및 무효에 대하여 법원이 최종심을 수행토록 규정
- 보증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리권자가 권리침해소송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
- 전리강제허가의 조건을 정비

강제허가에 대해서는 1992년의 개정을 통하여 전리법의 유관규정이 기본적으로 TRIPS협정과 일치되었다. 중국의 전리제도에는 합리조건강제허가(제48조), 공공이익강제허가(제49조) 및 의존전리강제허가(제50조)가 있는데, 의존전리강제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대하여 전리법은 「후발명이 선발명에 비하여 진보적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TRIPS협정은 「후발명이 선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중요한 기술진보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리법을 TRIPS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밖에 강제허가와 관련된 제한조건들 예를 들면, 강제허가의 실시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 범위와 시간을 정해야 하며, 강제허가 이유가 없어져 재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허가를 종료해야 하는 것 등의 규정은 1992년의 개정에서는 전리법 실시세칙에 들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를 내용이 전리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